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장사업장의 경우 소음 행정규제는?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중 공장사업장의 경우 배출 허용기준에 의거하여 부지경계선상에서 소음규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소음측정을 심야시간대별로 측정해본 결과 공장가동을 중지시키고 아무리 조용한 시간대에 측정을 해도 배경소음도만으로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장가동시 측정 소음도는 높아져서 규제기준을 초과하고는 있으나 문제는 소음저감 대책을 수립하더라도 배경소음도가 높아 규제 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도 배출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하는지와 초과할 경우 행정규제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 공장 주변에 주거지가 조성되면서 소음관련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이 경우에 배출허용기준과 더불어 생활소음규제 기준도 적용이 되는지요? 일반적으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공장의 경우 행정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만을 만족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소음규제기준에 공장사업장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 이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 배경소음이 이미 배출허용기준이나 규제기준을 초과 하고 있더라도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 보다 3dB 이상 크고 배경소음을 보정한 대상소음도가 배출허용기준 또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73조[별표 21]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 5] '공장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의 소음 배출시설을 설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에 적용되는 기준이며, 동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장일 경우에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제20조[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적용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 건설오니 재활용신고 여부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 과정에서 모래를 제조 후 발생하는 건설오니를 재활용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1항, 3항 시행규칙 제67조 1항, 3항의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득해야 하는지? 아니면 건설폐기물배출자신고시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신고하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면 되는지요?

A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됩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건설오니는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방법을 '재활용'으로 신고한 후 건설오니의 재활용 방법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Q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유예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3 신규시설은 오염 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으로 배출될 때까지 부착

유예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배출허용 기준은 자가측정 기록부 기준인가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 측정기준 인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3] 3, 다, 1)호 규정의 배출허용기준(기준부과금기준)의 30%미만으로 배출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월 1회 이상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한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Q 기준초과 벌금과 행정명령 과태료의 차이점은?
36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는 공단의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입니다. 공단일반현황은 3종업체-1, 4종업체-17, 5종업체-18개이며 지역은 나 지역입니다. 공동폐수처리장 일일방류량은 평균 2,300톤이며 물량중별은 1종으로 현재 TMS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기준초과에 따른 벌과금과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 배출허용 기준 초과 벌금과 측정기기 미준수에 따른 행정명령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 주체가 공단 입주업체 전체인지 공동폐수처리장(공동방지시설)으로만 국한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배출부과금,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5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 대표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 배출부과금 분담 등은 공동방지시설 운영규약에 따라 사업자별로 부담 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출부담금 분담 등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책임여부를 내부 규약에 명확하게 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따른 행정처분은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Q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교체시 변경신고는?
당사는 알루미늄과를 용융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용융로 중 1기(1.2톤/시)를 철거하고 신규용융로(1.0톤/시)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설비노후화 등 기타요인) 이때 계획대로 시행을 한다면 배출시설 변경신고 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지 용융로만 교체할 뿐 다른 변경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존 구성된 덕트라인도 그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물론 방지시설도 변경이 없습니다.

A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설범위가 같은 배출구에 연결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10%미만에 해당되고 배출시설의 증설에 따라 변경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방지시설의 처리용량 범위 이내이며, 배출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설치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이·화학실험실 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시 폐수배출 여부는?

충남 계룡시에 위치한 입암지방산업단지에 입주하는 회사로써 두부 및 식빵을 제조하려고 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발생하는 폐수는 전량 처리하여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재처리하도록 설계되어 공장내 폐수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 공장내 이·화학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실험실 폐수를 폐수처리시설로 판단하여 전량 위탁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의 79번 항목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하기 때문에 폐수배출시설로 간주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여 이·화학 실험실시설 면적이 100㎡ 이상으로서 1일 최대 폐수량이 0.1㎡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0.01㎡이상)인 경우에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나, 단순히 사업장의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로 분류됩니다.